

2022학년도 신진교원 연구과제 공모 요강 주요 Q&A

Q1. 본 공모에 지원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본 공모로 지원 가능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본 공모의 연구비 지원 최종결과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사업 과제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지원 이후 아래 표의 간접비 수주기준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최종결과물에 대한 증빙으로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선정된 사업수주계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지원범위
• 국가연구개발사업(R&D)	3년 이내의 간접비 누적의 합이 본 공모 지원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 ※ 최초 계약서 기간 확인 ※ 누적이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
• 기타(용역) 및 R&D 사업	3년 이내의 간접비 누적의 합이 본 공모 지원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 (예시) 용역/위탁, 일반기업, 지자체 ※ 최초 계약서 기간 확인 ※ 누적이 필요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기간 연장 가능

② 단,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사업에 지속적으로 도전하였으나 미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미선정 서류 확인(각 연도별 1건 이상, 총2건 제출 필수)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논문 진행 여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분	지원범위
논문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 선정되지 못한 경우 미선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단독 1편 인정 및 공동의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인 경우에만 인정 ※ 불임 [별표1] 신진교원 연구과제 공모 논문 지원기준 참조 ※ 교원학술활동(우수논문) 추가 지원 불가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 미선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각 연도별 1건 이상, 총 2건 이상 제출 필수) ※미선정 서류 확인 및 심사 후 논문 진행 여부 결정

※Q6, Q7, Q8 및 Q9 참조

Q2. 중점교원은 지원 가능한가요?

- ☐ 불가합니다. 교육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및 산학중점교원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Q3. 신청 대상자 중 이미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한가요?

- ☐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에 대한 소급 인정은 불가하며, 본 공모 선정 이후 신규로 지원하여 수주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신진교원 연구과제 선정 일자 : 2022년 6월 2일

Q4.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 ☐ 간접비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본교 교외연구비관리규정에 의거 본교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한 과제에 한합니다. 즉 연구비의 예산 및 지급관리를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사업이라면 본 공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에 포함됩니다.

Q5. 본 2022학년도 신진교원 연구과제 공모 이전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아직 본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은 체결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인정 가능한가요?

- ☐ 불가합니다. 본 공모 선정 이후 신규로 지원하여 수주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신진교원 연구과제 선정 일자 : 2022년 6월 2일

Q6. 국가연구개발사업(R&D) 및 기타(용역) 및 R&D 미선정의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미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예시) - 국가 각 부처, 한국연구재단, 기업, 지자체 등 사업 선정 결과 조회 시 미선정이 기재 되어있는 서류

- 국가 각 부처, 한국연구재단, 기업, 지자체 등에서 수신받은 공문으로 미선정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

- 국가 각 부처, 한국연구재단, 기업, 지자체 등의 도메인으로 수신받은 미선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내역

Q7. 신진교원 연구과제의 경우 처음부터 최종결과물을 논문으로 선택하여 지원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본 공모의 목적은 공모 요강에도 명시하였듯이 산학협력단 사업을 통해 신진교원이 국가의 각 부처 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최종결과물은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 과제 선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에 미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논문 제출이 가능하며 미선정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필수로 합니다.(각 연도별 1건 이상, 총 2건 이상 제출 필수) 나아가 미선정 서류 확인과 심사 절차를 거쳐 논문 진행 여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Q8.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의
간접비의 경우 발생 되어야 하는 간접비 기준 액수가
있나요?**

☐ 있습니다.

- ① 3년 이내의 간접비 누적의 합이 본 공모 지원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최초계약서 기간을 확인하고 누적이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② 다만, 1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로 발생해야 하는 간접비 기준 액수는 없습니다.

(예시1)

- ☐ 2022년 사업: 사업 기간 1년, 간접비 5백만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 수주
 - ☐ 2023년 사업: 사업 기간 1년 간접비 3백만원의 기타(용역) 및 R&D 수주
- (2022년 사업 + 2023년 사업) 간접비 누적의 합이 지원비의 70% 초과하기에 2024년 2월 29일까지 2건의 사업수주계약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합니다.

(예시2)

- ☐ 2022년 사업: 사업 기간 1년, 간접비 2백만원의 기타(용역) 및 R&D 수주
 - ☐ 2023년 사업: 사업 기간 1년, 간접비 2백만원의 기타(용역) 및 R&D 수주
 - ☐ 2024년 사업: 사업 기간 1년, 간접비 2백만원의 기타(용역) 및 R&D 수주
 - ☐ 2025년 사업: 사업 기간 1년, 간접비 2백만원의 기타(용역) 및 R&D 수주
- (2022년 사업 + 2023년 사업 + 2024년 사업) 3건의 사업수주계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2024년 2월 29일까지 제출합니다.
- ※ 2024년 2월 29일까지 간접비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계속사업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요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2025년 신규 체결 즉시 1건의 사업수주계약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간접비 누적의 합이 지원비의 70% 초과하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Q9.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에
미선정된 이후 논문으로 과제 방식을 변경 할 경우
별도의 절차가 있나요?**

- ☐ 네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사업에 미선정 될 경우 미선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각 연도별 1건 이상, 총 2건 이상 제출 필수) 및 미선정 서류 확인과 심사 절차를 거쳐 논문 진행 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Q10. 기계기구의 경우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수거를 할 예정인가요?**

- ☐ 네 물리적으로 수거할 예정입니다. 추후, 수거된 기계기구는 공용장비부서로 이관하여 관리될 예정입니다. 수거된 기계기구는 필요한 전 교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Q11. 소프트웨어 같이 물리적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수거를 할 예정인가요?**

- ☐ 모든 교원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추후 검토 및 방법을 마련하여 수거할 예정입니다.

**Q12.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의
경우 단독만 가능한가요?**

- ☐ 아니요. 공동연구자 또는 참여연구자도 가능합니다. 단 공동연구자 또는 참여연구자인 경우에도 간접비가 발생하여 본교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한 과제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연구비의 예산 및 지급관리는 본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여야 합니다.

**Q13. 2022학년도 교내연구과제에 이미 선정된 교원은
2022학년도 신진교원 연구과제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 아니요. 신진교원 연구과제에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 신진교원 연구과제 선정 시 2022학년도 교내연구과제는 포기하여야 하며, 이미 집행된 교내연구과제 연구비는 반환해야 합니다.

**Q14. 본 공모 이전 매년 계약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타(용역) 및 R&D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 공모 이후 시작되는 후속
연차과제의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제5차 연구관리위원회 결과 기존 다년도 과제 협약(단계별 과제 협약) 체결자의 경우 신진교원 연구과제 지원 불가하며, 신진교원 연구과제 선정자중 다년도 과제 진행중인 교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 또는 기타(용역) 및 R&D 사업 신규지원과 수주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Q15. 본 공모의 간접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교외연구비관리규정에 의거 본교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 시 협약(계약)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간접비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인정됩니다.

※간접비 인정기준은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여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Q16. 미선정 서류 제출 시 연도 인정 관련하여서는 본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인정하나요? 아니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가요?

- ☐ 미선정 서류 연도 인정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편의를 가급적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 외 미선정 서류 연도 인정 관련 부분에 있어 모호한 상황은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여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예시)

- ☐ 본교 신진교원 연구과제 선정 이후부터 2022.12.31.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R&D) 또는 기타(용역) 및 R&D 사업에 미선정 된 경우 2022년도 미선정 서류로 인정
- ☐ 본교 신진교원 연구과제 선정 이후부터 2023.02.28.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R&D) 또는 기타(용역) 및 R&D 사업에 미선정 된 경우 2022년도 미선정 서류로 인정
- ※ 신진교원 연구과제 선정 일자 : 2022년 6월 2일
- ☐ 2023.01.01.부터 2023.12.31.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R&D) 또는 기타(용역) 및 R&D 사업에 미선정된 경우 2023년 미선정 서류로 인정
- ☐ 2023.03.01.부터 2024.02.29.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R&D) 또는 기타(용역) 및 R&D 사업에 미선정된 경우 2023년 미선정 서류로 인정
- ☐ 2024.01.01.부터 2024.02.29.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R&D) 또는 기타(용역) 및 R&D 사업에 미선정된 경우 2024년 미선정 서류로 인정

Q17. 신진교원 연구결과물 제출 마감일(2024년 2월 29일) 이전에 교외 사업을 접수하였으나, 선정 결과가 마감일 이후에 발표되는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 네. 인정 가능합니다. 단, 신진교원 연구결과물 제출 마감일(2024년 2월 29일) 이전 교외사업 접수한 건에 한하여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① 교외사업이 선정될 경우

: 최대 5년까지 기간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에 의거하여 기간 내에 교외 사업 간접비 누적의 합이 공모 지원비의 70%(7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정 가능

② 교외사업에 미선정될 경우

: 미선정 서류 인정 가능

Q18. 간접비 총 수주액이 7백만원이 되지 않으나, 일정 금액의 간접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 아니요. 일정부분 발생한 간접비 수주액은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1)

① 신진교원 연구비 정산(사용)액이 1천만원인 경우

- 간접비 수주액: 4백만원

- 반환금 : 6백만원

※ 정산액(1천만원) - 4백만원(간접비 수주액) = 6백만원

② 신진교원 연구비 정산(사용)액이 8백만원인 경우

- 간접비 수주액: 2백만원

- 반환금 : 6백만원

※ 8백만원(정산액) - 2백만원(간접비 수주액) = 6백만원

단, 아래의 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진교원 사용한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① 간접비 수주액이 전무하고, 추후 미선정 서류(각 연도별 1건 이상, 총 2건 이상) 제출 및 확인, 심사 절차를 거쳐 논문으로 과제 방식을 변경하였으나 신진교원 연구비 최종결과물 기준에 맞는 논문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② 2022학년도 신진교원 연구과제 공모요강 “지급중지 및 회수(반환의무)”
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외 반환금액 확정 여부는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임

**Q19. 연구책임자 또는 단독연구가 아닌 공동연구자로 교외
사업에 지원하여 미선정된 경우에도 미선정 서류로
인정 가능한가요?**

☐ 네. 미선정 서류로 인정 가능합니다.

**Q20. 교내연구비관리규정시행세칙 [별표2] 교원학술활동
지원기준에 보면 “SSCI, A&HCI, SCIE 우수논문
추가지원은 신진교원 연구비 수혜자 제외” 라고
되어있는데, 우수논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아니요. 가능합니다. 단, 신진교원 연구비 수혜자가 과제변경 절차를 거쳐
신진교원 연구 최종결과물로 제출한 SSCI, A&HCI, SCIE 논문의 경우에
한해서는 교원학술활동(우수논문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Q21. 신진교원 연구과제 최종결과물을 논문으로 제출할 시 SSCI, A&HCI, SCIE 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논문의 경우 공동연구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주실 수 없을까요?

- ☐ SSCI, A&HCI, SCIE 논문의 경우 공동연구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 제9차 연구관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아래와 같이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 신진교원 연구과제 최종결과물로 논문을 제출할 시 [표1] 및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표1] ※ 최종기준 1.2점 이상 인정

구분	기준
SSCI, A&HCI, SCIE (IF=Q1)	3.0
SSCI, A&HCI, SCIE (IF=Q2)	2.5
SSCI, A&HCI (IF=Q3)	2.0

인원수	기준
1	1.0
2	0.7
3	0.6
4~9	0.5
10인 이상	0.4

구분	인원	최종기준
SSCI, A&HCI, SCIE (IF=Q1)	1	3.00
	2	2.10
	3	1.80
	4~9	1.50
	10인 이상	1.20
SSCI, A&HCI, SCIE (IF=Q2)	1	2.50
	2	1.75
	3	1.50
	4~9	1.25
	10인 이상	1.00
SSCI, A&HCI (IF=Q3)	1	2.00
	2	1.40
	3	1.20
	4~9	1.00
	10인 이상	0.80

- ※ 상기 [표1]은 신진교원 연구과제 지원기준이며, 연구실적 반영은 교원연구실 적평가기준 규정에 의거하여 인정
- ※ 신진교원 연구 최종결과물로 제출한 SSCI, A&HCI, SCIE 논문의 경우에 한해서는 교원학술활동(우수논문 추가) 지원 불가
- ※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기타(용역) 및 R&D에 선정되지 않아 과제 방식을 논문으로 변경하는 경우 미선정 관련 서류 각 연도별 1건 이상(총2건 이상) 제출 확인하여 심사 후 논문 진행 여부 결정 예정

[조건]

구분	내용	비고
연구책임자	논문의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함	연구책임자는 신진교원 연구비를 신청한 본교 교원을 말함

단, 논문 투고 시기는 교외사업 미선정 서류(각 연도별 1건 이상, 총 2건 이상) 제출 및 확인, 심사 절차를 거쳐 과제 방식을 논문으로 변경한 이후
(※교육부 회계감사 지적 사항)

Q22. 과제 방식을 논문으로 변경하기 위한 미선정 서류 확인 및 심사 절차의 경우 언제 진행 예정인가요?

- ☐ 2024년 2월 경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논문 투고 시기는 교외사업 미선정 서류(각 연도별 1건 이상, 총 2건 이상) 제출 확인, 심사 절차를 거쳐 과제 방식을 논문으로 변경한 이후여야 합니다.(※교육부 회계감사 지적 사항)
- 신진교원 연구과제 최종결과물은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국가 및 기타 R&D 과제 선정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정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논문 제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Q23. 교내 신진교원 연구비 수혜자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교외연구과제신청 지원비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한가요?

- ☐ 교내 신진교원 연구비 수혜자의 경우 “교내 신진교원 결과물(또는 미선정 서류)과 관련된 연구과제”는 산학협력단 교외연구과제신청 지원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교내 신진교원 연구비의 경우 교외연구과제 수주 제고를 위한 지원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교외연구과제신청 지원비 역시 교외연구과제 수주 제고를 위한 지원 제도로서 교외연구과제 지원비 신청 및 지원 시 중복 수혜 등의 사유로 감사 지적 사유가 될 수 있기에 불가합니다.

**Q24. 2023년 3월에 신청 접수한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및
공동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지난 4년간
대부분 2월경 접수를 해왔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 3월로
접수 기한이 연기되었는데 해당 건을 2022년도 지원
건으로도 인정해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 ☐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2023년도 지원 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상이나, 2023학년도 제1차 연구관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2023년도 3월에 접수된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및 공동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의 경우 2022년도 지원 건으로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기존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및 공동연구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의 경우 2월 접수가 주를 이루었고 그에 따라 다수의 신진 교원이 2월 사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신진 교원이 2022년도 지원 건으로 인정 요청을하는 경우 2022년 지원 건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Q25. 신진교원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자(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간접비 인정기준 산식은 무엇인가요?**

- ☐ 2023학년도 제2차 연구관리위원회 결과 다음과 같이 공동연구자(참여연구자) 간접비 인정기준 산식을 의결하였습니다.

- ☐ 신진교원 연구과제 수행 시 우리대학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참여연구)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간접비 수혜액을 산정한다.

(M: 우리대학에 해당하는 간접비 총액, N: 총연구자 수)

가. 세부 과제 분리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 $M \times (1/2)$ 로, 공동연구자(참여연구자) $M \times (1/2) \times \{ 1/(N-1) \}$ 로 한다.

나. 세부 과제 분리 있는 경우:

총책임자는 $M \times \{ 2/(N+1) \}$, 세부책임자는 $M \times \{ 1/(N+1) \}$ 로 하며, 세부과제 공동연구자(참여연구자)는 $M \times \{ 1/(N+1) \} \times (1/2)$ 로 한다.

※ 그 외 인정 및 심사, 심의 관련 여부는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입니다.